

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

의안
번호

2818

제출년월일 : 2016.04.12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정이유

-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주요내용

- 가.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4조)
- 나.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(제6조)
- 다. 근로자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및 법률상담지원,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- 라.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노동인지적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- 마.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·운영 근거 규정 마련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1조)
- 바. 근로자 차별해소, 근로환경개선, 노동인권지킴이 등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2조)
- 사.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교육, 홍보, 환경개선 지원 등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3조)
- 아. 근로시간 단축, 육아휴직제도 정착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(안 제14조)
- 자.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5조 ~ 안24조)

- 제정 조례안 : 붙임 1
- 관련법령 발췌서 : 붙임 2
-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- 사전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 - 입법예고 : 2016. 3. 3. ~ 3. 23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 : 붙임 4
 -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 방침 결정문

(붙임 1)

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안산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와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2. "사용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.
3. "공공기관" 이란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및 소속 행정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

제6조(노동정책 기본계획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노동정책 기본 방향

2.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

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

4. 노동 관련 조사·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

5.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)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점검 및 평가)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9조(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) 시장은 근로자 권리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, 정보제공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)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)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근로복지기본법」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) ① 시장은 비정규직, 청소년, 여성, 노인,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동인권지킴이 제도 등 취약계층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3조(산업안전 및 보건) ① 시장은 근로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

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
2.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, 홍보, 환경개선 지원
3.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14조(일과 삶의 균형) 시장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
2.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
3.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

제3장 안산시노동인권보호위원회

제1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노동인권보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·자문
2.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·자문
3.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
4. 그 밖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

제16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시 노동업무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안산시의회 의원
 2.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
 3. 노동분야 정부기관, 시민사회단체, 사용자 단체,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
-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제18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9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20조(결격사유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
3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

4.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2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23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24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
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산업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	산업정책과장
	직위·성명 담당·팀장 직위·성명 담당자 성명·전화	김동완 노동정책계장 정진권 권용철 (행정 2283)

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81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. 4. 12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“노동정책”은 포괄적 의미로 국가사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제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소관 범위를 축소하고,
- 신설 되는 “노동인권지킴이”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성, 위촉방법, 운영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함.

□ 주요골자

-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을 노동인권정책으로 수정함. (안 제2장, 안 제6조제1항~제2항)
- 시장이 노동인권지킴이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신설함. (안 제12조제4항)
-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를 단서조항으로 신설함.(안 제18조제1항)
-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중 불명확한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조정함.(안 제20조)

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
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2장의 제목, 안 제6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 중 “노동정책”을 각각 “노동인권정책”으로 한다.

안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인권지킴이 위촉,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안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안 제20조의 제목 “(결격사유)”를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
4.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</p> <p>제6조(노동정책 기본계획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노동정책 기본 방향</p> <p>2 ~ 5 (생략)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2장 노동인권정책 -----</p> <p>제6조(노동인권정책----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노동인권정책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노동인권정책 -----</p> <p>2 ~ 5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~ ④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12조(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12조(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)</p> <p>① ~ 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노동인권지킴이 위촉,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
<p>제18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〈단서신설〉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임기) ① -----</p> <p>----- 다만,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20조(결격사유) (생략)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</p> <p>4.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	<p>제2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(원안과 같음)</p> <p>1.~2. (원안과 같음)</p> <p>3.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</p> <p>4.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